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15호 2015. 12. 23. (수)

선 결	기관의 장

##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298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19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  
거창군 규칙 제1192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  
거창군 규칙 제1193호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18  
거창군 규칙 제1194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6

## 훈 령

거창군 훈령 제390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38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64호 웅양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기간 및 대표자)승인 고시 …… 40  
 거창군 고시 제2015-166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 72  
 거창군 고시 제2015-167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 73  
 거창군 고시 제2015-168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취소 고시 …………… 7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1100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에 따른 재열람 ·  
 공고 …………… 75  
 거창군 공고 제2015-1111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  
 한 공고 …………… 77  
 거창군 공고 제2015-1117호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80  
 거창군 공고 제2015-1123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4

회 담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봉

2015년 12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98호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창몰 :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③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원사업)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2.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3.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4.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3. (생략)</p> <p>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6.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p> <p>7. ~ 11. (생략)</p> <p>제5조(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제28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p> <p>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전사판매장: 거창푸드의 전사판매 및 마케팅</p> <p>2. 집하·선별·저장: 거창푸드 농산물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2조(정의) (생략)</p> <p>1. ~ 3. (생략)</p> <p>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기목-----</p> <p>5.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p> <p>7. ~ 11. (현행과 같음)</p> <p>제5조(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28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p> <p>① ----- ----- ----- -----</p> <p>1. ----- 2. -----</p> <p>3. 거창물: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위탁운영) ① ~ ⑥ (생략)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9조(위탁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 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9조의2(지원사업)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u></li> <li><u>2.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u></li> <li><u>3.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u></li> <li><u>4.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u></li> </ol>
<p>제30조(위탁의 취소) ① ~ ② (생략)  <u>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u></p>	<p>제30조(위탁의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나. 관련 조문

- 제29조의2제1호 :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2호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3호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4호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거창푸드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발전
- 거창푸드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발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총 비용(a - b)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세출	도비	-	-	-	-	-
	군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소계(a)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세입	0					
	지방세	-	-	-	-	-
	소계(b)	-	-	-	-	-

3. 관련 의견 : 거창푸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영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91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가.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용어 정의와 위탁운영 근거 마련
- 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다.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
- 라.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가. 거창푸드종합센터 기능 중 거창몰 운영 항목 추가와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 거창몰 :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 지역에 설치·운영
- 나.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안 제29조)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
- 다.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 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삭제(안 제30조제3항)
  - 위탁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규정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 제4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민법」 제75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80,000천원(2016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5. 9. 24. ~ 2015. 10. 14.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봉

2015년 12월 23일

거창군 규칙 제119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105
----------	------------

제출연월일	2015. 12. 09.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 기획감사실장의 직렬을 확대하고, 정원 배정기준 등에 맞게 일반직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4 ~ 5급 직렬확대(안 별표)

○ 서기관·행정사무관 → 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

#### 나. 일반직 6급 정원 증원 3명(안 별표)

○ 본청 6급(증2) : 85명 → 87명(행 1, 행·공·시 1)

○ 직속기관 6급(증1) : 22명 → 23명(보·의·간 1)

#### 다. 일반직 7급 정원 감원 2명(안 별표)

○ 본청 7급(감2) : 97명 → 95명(행 -1, 행·시 -1)

#### 라. 일반직 8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직속기관 8급(감1) : 34명 → 33명(보·의·간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14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20. ~ 12.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5년 12월 23일

거창군 규칙 제1192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제9호·제10호(뒷면)·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재 정 보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남, 여)

주 소 :

위 사람이 생활안정기금 용자를 받아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보증인 성명 (인)

주 소 :

보증인 성명 (인)

거 창 군 수 귀 하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85
----------	-----------

제출연월일	2015. 11. 23.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실장

##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 중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별지 제1호·제9호·제10호(뒷면)·제11호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12. ~ 11. 0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봉

2015년 12월 23일

거창군 규칙 제1193호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총괄부채관리관 - 부군수

제27조제1항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4월 1일”을 “2월 10일”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1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2호·제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①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반납자) 귀하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원)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반납자) 성명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지출원 귀하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①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반납자) 귀하		

[별지 제62호서식]

### 자 금 운 용 기 록 부

연월일	적요	기관명	지					환					잔액	비고
			정기 예금	<u>MMDA</u>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u>MMDA</u>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기재요령> 비교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94
----------	-----------

제출연월일	2015. 11. 23.
제 출 자	재무과장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15.5.28.)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 해 2.28.⇒해당 연도 12.31.) 적용에 따른 이월예산의 요구·확정시기를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 의무에 따라 공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월요구서 제출기한 조정(안 제27조제1항)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나. 예산이월 확정시기 조정(안 제27조제2항)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 10일 이내 확정

#### 다. 이월장부정리 마감일 조정(안 제34조제2항)

○ 4월 1일 ⇒ 2월 10일

#### 라. 서식 정비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 및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 개정

○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폐쇄기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그 밖에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5. 10. 19. ~ 11. 08.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5년 12월 23일

거창군 규칙 제1194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을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 제7조2항에 따라”로 “ [별지 제  
2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로 “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 [별지 제7호서식] 에 의거”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한”을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조례」 제11조에 의한”을 “조례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공설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거창군 공설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u>」----- -----</p>
<p>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u>조례</u>」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시장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u>거창군 공설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u>----- -----</p>
<p>② 「<u>조례</u>」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거나 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공사내역 등이 포함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u>----- ----- -----<u>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u>----- -----</p>
<p>제3조(허가) ① 「<u>조례</u>」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3조(허가) ① <u>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u>----- ----- -----<u>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u>----- -----</p>
<p>② 「<u>조례</u>」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u>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u>----- ----- -----<u>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u>----- -----</p>
<p>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u>조례</u>」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u>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u>----- ----- -----<u>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u>----- -----</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u>에 따른</u>----- ----- -----<u>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u>-----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기간) ①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u>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u>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용기간) ①----- -----<u>별지 제6호서식</u> <u>에 따른</u>----- -- ②-----<u>에 따른</u>----- ----- -----<u>별지 제3호서</u> <u>식에 따른</u>----- -----</p>
<p>제6조(사용폐지) 「조례」 제7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사용기간 내에 시장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후 5일 이내에 <u>[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u>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용폐지) <u>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u>----- ----- <u>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u>----- ---</p>
<p>제7조(상속승계)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사용권 상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u>[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u>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u>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상속승계) ① <u>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u>----- ----- <u>경우</u>-----<u>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u>----- ②-----<u>에 따른</u>----- ----- -----<u>별지 제3호서식</u> <u>에 따른</u>-----</p>
<p>제10조(사용료 징수의 서식) 「조례」 제10조 제3항에 <u>의한</u> 사용료 징수결의와 납입 고지, 「조례」 제11조에 <u>의한</u> 사용료 영수증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p>	<p>10조(사용료 징수의 서식) <u>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u>----- -----<u>조례 제11조에 따른</u>----- ----- -----</p>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99
----------	-----------

제출연월일	2015. 11. 25.
제 출 자	승강기경제과장

##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호 ~ 4호, 6호 ~ 8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법제처)에 맞춰 용어 순화함

○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른(따라)

○ 본문 내용에서 별표, 별지서식 인용 시에는 “[ ]”를 쓰지 않고, 제목에서만 “[ ]” 사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05 ~ 11. 2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5년 12월 23일

거창군 훈령 제390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5 ~ 106
----------	------------

제출연월일	2015. 12. 09.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 기획감사실장의 직렬을 확대하고, 정원 배정기준 등에 맞게 일반직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 정원변동 없음(안 별표)

- 기획감사실 : 서기관·행·사·시 5급 증1, 서기관·행 5급 감1
- 행정과 : 행 6급 증1, 행 7급 감1
- 승강기경제과 : 행·공·시 6급 증1, 행·시 7급 감1
- 보건소 : 보·의·간 6급 증1, 보·의·간 8급 감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웅양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기간 및 대표자) 승인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1-03(2011.01.14)호로 승인 고시된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웅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기간연장 및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승인신청이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015. 12. 17.

### 거 창 군 수

#### □ 웅양 일반산업단지 계획

##### 1. 산업단지의 명칭

- 웅양 일반산업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거창군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와 경남서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지대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 나. 면 적 : 68,613m<sup>2</sup>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11. 01. 17 ~ 2015. 12. 31.  
 가. 사업시행기간 : 2011. 01. 17 ~ 2018. 12. 31.

나. 사업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나. 사업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 (주)일 성 대표이사 김 형 선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가. 사업시행자 : (주)일 성 대표이사 김 영 성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분	합 계	전	임야	구거
필지수	7	3	2	2
면적(m <sup>2</sup> )	68,613	2,535	65,543	535
구성비(%)	100.0	3.7	95.5	0.8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 계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사유지
필지수	7	1	6
면적(m <sup>2</sup> )	68,613	423	68,190
구성비(%)	100.0	0.6	99.4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계		68,613	100.0	
산업시설용지		36,555	53.3	
녹지용지	소공원	2,427	3.5	
	완충녹지	13,058	19.0	
공공시설용지	도로	12,138	17.7	
	배수지	1,038	1.5	
	유수지	1,142	1.7	
	오수처리시설	658	1.0	
	대체구거	480	0.7	
	주차장	1,117	1.6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1) 도로 계획

##### 가)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계	3	780	12,138	-	-	-	2	704	11,829	1	76	309
중로	2	704	11,829	-	-	-	2	704	11,829	-	-	-
소로	1	76	309	-	-	-	-	-	-	1	76	309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40	18	집산도로	102	중로 2-33	죽림리 산136	일반도로	산업용지	-	-
신설	중로	2	41	15	집산도로	602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도로	산업용지		
신설	소로	3	230	4	국지도로	76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도로	중2-41~배수시설		

## 2) 주차장 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379	379	379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7-1	379	738	738		

## 3) 녹지시설 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3,058	13,058	13,058		

## 4) 공원 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02	1,002	1,002		
신설	20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425	1,425	1,425		

## 5) 방재시설 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1,142	1,142	-	

## 6) 상수도시설 계획

### ○ 용수량

구 분	용수량(m <sup>3</sup> /일)	비 고
계	21.5	계획용수량 : 21.5m <sup>3</sup> /일 생활용수는 2012년 완공되는 웅양지방상수도에 상수도급수 신청을 하여 사용할 계획
생 활 용 수	21.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죽림배수시설	용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038	1,038	1,038		

## 7) 환경기초시설 계획

### ○ 하수도 설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하수도	죽림 하수처리장	용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658	658	-	

### ○ 하수량

구 분		하수량(㎡/일)	비 고
계		19.32	계획하수량 : 19.32㎡/일 죽림 하수처리장 설치
생활하수	산업시설	19.32	

## 9. 재원조달계획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거창군

나.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투자	구성비(%)	비고
합 계		5,146	100.0	
시행자	계	5,007	97.3	
	자부담	2,940	57.1	
	토석제공에 따른 이윤	2,067	40.2	
보조금(군비)		139	2.7	오수처리시설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계	5,146 5,146	160 -	557 -	2,372 -	2,057 -	- 678	- 700	- 1,668	- 2,100
시행자 부담	5,007 5,007	160 -	557 -	2,372 -	1,918 -	- 678	- 700	- 1,668	- 1961
보조금 (균비)	139 139	- -	- -	- -	139 -	- -	- -	- -	- 139

라. 자금 세부 투입 계획 (변경추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합계		5,146	678	700	1,668	2,100
수 입	계	2,700	-	1,080	1,080	540
	골재판매대	2,700	-	1,080	1,080	540
지 출	계	7,846	678	1,780	2,748	2,640
	골재생산비	4,140	-	1,656	1,656	828
	토지매입비	584	584	-	-	-
	인건비	1,638	94	112	344	1,088
	자재및장비	1,448	-	-	736	712
	기타 경비	84	-	12	12	6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1”

###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코드	업종	위치	면적(m <sup>2</sup> )	구성비(%)
웅양 일반산업단지	합 계			36,555	100.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I-1	10,611	29.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I-2	14,611	40.5
	C28	전기장비 제조업	I-3	5,632	15.4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4	5,501	15.1

###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

- ▶ 하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나. 주요시설 설치계획

- ▶ 용수공급설비 : 생활용수21.5m<sup>3</sup>/일, 공업용수0톤/일,  
관로(75mm, 50mm, 35mm, L=1,461m)
- ▶ 하수처리시설 : 처리시설19.32m<sup>3</sup>/일, 관로(300mm, L=353m)

###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 지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계	68,613	100.0	
산업시설용지	36,555	53.3	사업자귀속
공공시설용지	16,573	24.2	
도 로	12,138	17.7	거창군귀속
배 수 지	1,038	1.5	거창군귀속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유수지	1,142	1.7	거창군귀속
오수처리시설	658	1.0	거창군귀속
대체구거	480	0.7	국(농림수산식품부) 귀속
주차장	1,117	1.6	거창군귀속
녹지용지	15,485	22.5	
소공원	2,427	3.5	거창군귀속
완충녹지	13,058	19.0	거창군귀속

## 나. 시설물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 2-1	B=18.0m	102.0m	거창군에 귀속
	중로 2-2	B=15.0m	602.0m	거창군에 귀속
	소로 3-1	B=4.0m	76.0m	거창군에 귀속
구조물	L형옹벽	H=3.0m~7.5m	264.6m	거창군에 귀속
	전석쌓기	H=0.6~3.0m	2,275.4 m	거창군에 귀속
우수	L형측구	TY-1	1,614.0 m	거창군에 귀속
		TY-2	345.6m	거창군에 귀속
	RL형측구		99.0m	거창군에 귀속
	파형강판	D250mm	223.4m	거창군에 귀속
		D450mm	443.0m	거창군에 귀속
		D500mm	87.0m	거창군에 귀속
		D600mm	115.0m	거창군에 귀속
		D700mm	64.0m	거창군에 귀속
		D800mm	65.0m	거창군에 귀속
	D1,000mm	187.0m	거창군에 귀속	

구	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400C	1,546.0 m	거창군에 귀속	
		1000C	98.0m	거창군에 귀속	
	횡단측구	400C	46.3m	거창군에 귀속	
	집수정	우수받이, 600×600×1000 1000×1000×1500	42EA	거창군에 귀속	
		우수맨홀	47EA	거창군에 귀속	
	산마루측구	조립식	255.0m	거창군에 귀속	
	유수지		1개소	거창군에 귀속	
오수	오수맨홀	오수받이, 오수맨홀	24EA	거창군에 귀속	
	오수관	D250mm, D300mm	494.0m	거창군에 귀속	
	오수처리장		1개소	거창군에 귀속	
상수	상수관로	D50mm, D75mm, D300mm	1,460.0 m	거창군에 귀속	
	소화전	지상식	3EA	거창군에 귀속	
포장	아스콘포장	T=50cm	9,184.0 m <sup>2</sup>	거창군에 귀속	
조경	차폐수목	산벚나무 외10종	19,462주	거창군에 귀속	
교통안 전시설	교통표지판	주의표시	19.0EA	거창군에 귀속	
	차선도색	백색 546.4m <sup>2</sup> , 황색 329.1m <sup>2</sup>	875.5m	거창군에 귀속	
전기	가로등	팔각테과 H=10.0	19EA	거창군에 귀속	
대체 구거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1000C	142	국(농림수산식품부)에 귀속	

14.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의 사항 : 해당없음

15.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사

1) 거창군 총괄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804,144,882	804,144,882	100.00	
주거지역	소 계	4,874,062	4,874,062	4,874,062	0.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4,955	1,464,955	1,464,955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211,543	3,211,543	3,211,543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430	137,430	137,430	0.02	
	준주거지역	60,134	60,134	60,134	0.01	
상업지역	소 계	347,740	347,740	347,740	0.0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347,740	347,740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계	1,340,631	1,340,631	1,340,631	0.1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312,188	1,312,188	1,312,188	0.16	
	준공업지역	28,443	28,443	28,443	0.01	
녹지지역	계	25,410,348	25,410,348	25,410,348	3.16	
	보전녹지지역	1,654,760	1,654,760	1,654,760	0.21	
	생산녹지지역	7,713,291	7,713,291	7,713,291	0.96	
	자연녹지지역	16,042,297	16,042,297	16,042,297	1.99	
관리지역	소계				30.65	
	관리지역	8,710,815	8,710,815	8,710,815	1.08	
	보전관리지역	155,603,005	155,603,005	155,603,005	19.35	
	생산관리지역	3,896,987	3,896,987	3,896,987	0.48	
	계획관리지역	78,296,928	78,296,928	78,296,928	9.74	
농림지역	484,715,266	484,715,266	484,715,266	60.28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9,100	40,949,100	40,949,100	5.09		
미지정	-	-	-	-		

※기정면적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0-555호(2010년 10월 14일) 참조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역명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8,613	68,613	68,613	100.0	
공업지역	소계	68,613	68,613	68,613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8,613	68,613	68,613	100.0	
	준공업지역	-	-	-	-	
관리지역	소계	-	-	-	-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sup>2</sup> )	용적률 (%)	결정사유
		기정	변경			
①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63,700	250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①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405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3,070	250	
①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7-1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1,843	25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2	웅양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68,613	68,613	68,613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68,61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68,613	100.0	
산업시설용지		36,555	53.3	
녹지용지	소공원	2,427	3.5	
	완충녹지	13,058	19.0	
공공시설 용지	도로	12,138	17.7	
	배수지	1,038	1.5	
	유수지	1,142	1.7	
	오수처리시설	658	1.0	
	대체구거	480	0.7	
	주차장	1,117	1.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계	3	780	12,138	-	-	-	2	704	11,829	1	76	309
중로	2	704	11,829	-	-	-	2	704	11,829	-	-	-
소로	1	76	309	-	-	-	-	-	-	1	76	309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40	18	집산 도로	102	중2-33	죽림리 산136	일반 도로	산업 용지	-	
신설	중로	2	41	15	집산 도로	602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산업 용지	-	
신설	소로	3	230	4	국지 도로	76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중2-41~배수시설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 2류 40호선	노선신설 B=18, L=102m	기존 중로 2-33호선과 웅양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중로 2류 41호선	노선신설 B=15m, L=602m	웅양일반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기반시설용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소로 3류 230호선	노선신설 B=4m, L=76m	단지내 배수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379	379	379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7-1	379	738	738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379m <sup>2</sup>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설
-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738m <sup>2</sup>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회차공간 확보 및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설

다)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3,058	13,058	13,058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1	녹지	완충녹지 A = 13,058m <sup>2</sup>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농지 및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차폐기능의 완충녹지를 설치 하고 자 함

라)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02	1,002	1,002		
신설	20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425	1,425	1,425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9	소공원	신설 : 1,002m <sup>2</sup>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20	소공원	신설 : 1,425m <sup>2</sup>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마) 도시관리계획(소공원⑨조성계획) 결정조서

1. 부지총괄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002	1,002	1,002	
신설	도로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8	108	108	보행자 전용도로 B=1.5m, L=60m
신설	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	894	894	894	녹지

2. 시설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002	-	-	
신설	도로	108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녹지	894	-	-	녹지

### 3. 일반시설별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002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도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108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녹지	1-2	녹 지	894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 바) 도시관리계획(소공원②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1. 부지총괄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425	1,425	1,425	
신설	운 동 시 설	웅양면 죽림리 산136	54	54	54	
신설	녹 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	1,371	1,371	1,371	녹지

#### 2.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425	-	-	
신설	운 동 시 설	54	-	-	
신설	녹 지	1,371	-	-	녹지

### 3. 일반시설별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위 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425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운동 시설	2-1	운 동 시 설	54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녹지	2-2	녹 지	1,371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사) 방재시설 (변경없음)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우수지	저류 시설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1,142	1,142	-	

■ 우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우수지	○신설 : 1,142㎡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내 구역내 증가하는 우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구 저류시설을 설치 하고자 함

아)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죽림 배수시설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038	1,038	1,038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5	죽림 배수시설	신설 : 1,038㎡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각 공장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자)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하수도	죽림 하수처리장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658	658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3	하수도	죽림하수처리장 A=658㎡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내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죽림하수처리장을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	I	68,613	1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10,611	산업 시설 용지
			2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14,811	
			3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5,632	
			4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5,501	
			5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13,058	녹지
			6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1,002	소공원
			7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1,425	
			8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하수 처리장
			9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1,038	배수 시설
			10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유수지
			11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379	주차장
			12	웅양면 죽림리 산137-1번지 일원	738	
			13	웅양면 죽림리 405번지 일원	480	대체 구거
			14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11,831	도로
			15	웅양면 죽림리 산137-1번지 일원	307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산업시설 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 1 I - 2 I - 3 I - 4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li> <li>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별표4에 따른 배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li> </ul>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70%이하)</li> </ul>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250%이하)</li> </ul>	

나)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 11 I - 12	용도	지정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 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70%이하)</li> </ul>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250%이하)</li> </ul>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1	I-1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2	I-2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3	I-3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4	I-4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5	I-5	완중녹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33호선

※ 조경용지(5m)내 스트로브 잣나무 식재를 권장함.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제1장 총칙

제2장 민간부분 운용지침

제3장 공공부분 운용지침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되는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결정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관련법규, 조례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 ② 본 지침의 내용은 지정용도와 불허용도로 나누어진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 ③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대상구역)

구역의 범위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의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② “지정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③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④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⑤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⑥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① 본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법령, 조례 및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② 본 지침의 내용중 누락부분이 있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의 해석 및 유사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의 관례를 따른다.

**제2장 민간부분 운용지침**

제1절. 부지에 관한사항

**제6조 (사업단위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① 단일 필지를 하나의 가구 또는 획지로 구분하여 공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일단의 공장용지
- ② 단계별 또는 둘 이상의 사업승인 단위로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공장과 부대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계획 등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할 경우의 일단의 부지
- ③ 일단의 공장용지 또는 부대시설 부지를 별도로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지여건 및 부지 규모에 따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해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2절. 사업단위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단위에 관한 사항)**

- 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지에 건설하는 사업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6조 제2항의 부지에 건설하는 사업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6조 제2항의 단계별 또는 둘 이상이 사업승인단위로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건설계획을 초과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3절. 용도에 관한 사항

**제8조 (용도제한)**

- ①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필지는 지정된 용도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 ② 용도가 지정된 필지의 지정용도는 다음과 같다.
  -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
  - B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
  -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계획조례」상 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 D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지정용도는 그림의 상단에, 불허용도는 하단에 명기한다.

A
B

예) 건축물용도 : A-지정용도, B-불허용도

④ 용도제한 분류표

지정용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
불허용도	①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②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4절. 밀도에 관한 사항

제9조 (용적률의 적용)

- ① 공업시설 용적률의 기준은 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그림의 좌측상단에 명기한다.

250%	

예) 용적률 250% 이하

**제10조 (건폐율의 적용)**

- ① 공업시설 건폐율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그림의 좌측하단에 명기한다.



예) 건폐율 70% 이하

제5절.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공장등의 배치)**

공장 등의 배치는 업종별로 구분 배치토록 권장한다.

제6절.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2조 (건축물의 형태)**

- ①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쪽의 길이를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 ② 건축물 1동의 길이는 다음의 1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1. 경사도 10° 이상 산지 : 100m 이내
  - 2. 그 밖의 지역 : 150m 이내
- ③ 경사도 10°이상 산지에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이상을 이격하도록 한다.

제7절.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대지내 조경)**

- ① 대지내 개별 시설주변에는 조경식재, 환경장식물과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② 대지내 통로에는 장식포장을 권장하며 아스콘, 고압벽돌, 전돌 등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선택하여 통행의 안전 및 쾌적성을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제8절. 동선에 관한 사항

**제14조 (차량 진출입구)**

-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도면상에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며 진입도로로부터 연결되는 차량 진입구간은 가능한 평행하도록 한다
- ② 단지내의 주요차량동선은 보행동선과 원칙적으로 분리시키되 부득이한 경우 단차를 두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완화)**

- ①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의 기준의 완화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부분 운용지침**

## 제1절. 도로에 관한 사항

### 제16조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 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지구내부의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령 관련 시행규칙에 제시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7조 (과속방지시설)

- ① 지구 내부 차량통행속도의 제한이 요구되는 구간에 과속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15m내외) 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제18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 ①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 ②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 ③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16.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변경없음)

번호	X 좌표	Y 좌표
1	254449.0810	101914.0690
2	254453.7800	101912.9020
3	254460.0020	101908.2940
4	254466.4270	101900.2240
5	254466.3530	101891.7150
6	254466.2790	101883.2060
7	254470.5020	101871.2670
8	254475.3170	101866.1940
9	254487.2590	101864.0790
10	254491.6440	101862.5470
11	254498.5090	101863.4390
12	254512.4680	101866.3250
13	254517.7160	101864.1260
14	254521.4960	101862.1430
15	254524.4710	101859.8940
16	254538.4960	101850.1270
17	254544.9580	101841.5450
18	254549.4790	101827.4430
19	254552.1820	101811.7280
20	254552.8480	101802.6140
21	254552.4750	101797.2490
22	254558.1580	101764.8170
23	254557.2430	101742.8410
24	254556.4987	101725.7065
25	254549.9160	101725.3090
26	254544.3820	101724.9730
27	254542.9045	101714.2120
28	254541.3110	101698.8890
29	254544.4210	101686.1150
30	254545.8410	101671.1640
31	254544.4290	101658.8500
32	254547.6030	101649.7550
33	254548.0084	101644.6680
34	254543.0578	101644.2735
35	254479.0439	101636.7272
36	254350.1781	101647.5682
37	254300.0893	101660.6017
38	254245.0825	101769.1588
39	254271.0513	101890.4924
40	254307.1620	101887.9340
41	254312.1840	101891.1860
42	254331.9900	101892.3800
43	254389.6020	101897.2760

##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거창군청(승강기경제과 ☎055-940-3362)에 두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붙임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토지조서(전체)

번호	소재지(경상남도)				토지내역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합 계					110,078 110,100	68,613 68,613							
1 1-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405 405	전 전	1,338 1,338	896 896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2 2-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405-1 402-4	구 구	150 172	112 11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405-1 402-4 [합병]
3 3-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406-1 406-1	전 전	712 712	644 644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4 4-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408 408	전 전	995 995	995 995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5 5-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1175 1175	구 구	1,263 1,263	423 423			국(농림수산식품부) 국(농림수산식품부)				
6 6-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산136 산136	임 임	62,678 62,678	46,736 46,736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7 7-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산137- 1 산137- 1	임 임	42,942 42,942	18,807 18,807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 토지조서(산지협의조서)

번호	소재지(경상남도)				토지내역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합 계					105,620	65,543							
1 1-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산136 산136	임 입	62,678 62,678	46,736 46,736		경남진주시이현동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 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 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2 2-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산137-1 산137-1	임 입	42,942 42,942	18,807 18,807		경남진주시이현동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 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 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 토지조서(농지협의조서)

번호	소재지(경상남도)				토지내역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합 계					4,458 4,480	3,070 3,070								
1 1-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405 405	전 전	1,338 1,338	896 896		경남진주시이현동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2 2-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405-1 402-4	구 구	150 172	112 112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405-1 402-4 [합병]	
3 3-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406-1 406-1	전 전	712 712	644 644		경남진주시이현동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4 4-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408 408	전 전	995 995	995 995		경남진주시이현동102-46 경남거창군웅양면죽림리산136	최 경 연 (주) 일성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경남진주시상대동180-2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동부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5 5-1	거창 거창	웅양 웅양	죽림 죽림	1175 1175	구 구	1,263 1,263	423 423			국(농림수산식품부) 국(농림수산식품부)					

<붙임1> 산업단지 내 지장물조서 (변경없음)

○ 산업단지 내 지장물 총괄조서

구분		단위	총계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물건	분묘	기	13	13
	상석	개	3	3
	망석	개	2	2

○ 산업단지 내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장물건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분묘번호	종류	규격	수량	주소	성명	
1	거창	웅양	죽림	산136	입	1	봉분	2.0*1.9	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1리 243	곽상태	
						2	봉분	2.0*1.9	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1리 243	곽상태	
						3	봉분	2.0*1.9	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1리 243	곽상태	
						4	봉분	2.0*1.9	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1리 243	곽상태	
						5	봉분	2.0*1.9	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1리 243	곽상태	
상석	1.0*0.75*0.3	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1리 243	곽상태								
2	거창	웅양	죽림	산136	입	6	봉분	2.0*1.9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375	신길재	
							상석	1.0*0.75*0.3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375	신길재	
							망석	2.15*0.3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375	신길재	
						7	봉분	2.0*1.9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375	신길재	
						8	봉분	2.0*1.9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375	신길재	
						9	봉분	2.0*1.9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375	신길재	
						10	봉분	2.0*1.9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375	신길재	
11	봉분	2.0*1.9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375	신길재							
3	거창	웅양	죽림	산136	입	12	봉분	2.0*1.9	1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성완 511-604	신효재	
							상석	1.0*0.75*0.3	1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성완 511-604	신효재	
						망석	2.15*0.3	1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성완 511-604	신효재		
						13	봉분	2.0*1.9	1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성완 511-604	신효재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 거 창 군 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 면적(m <sup>2</sup> )		개간 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산210	61,210	4,210	농지조성 (과수원 조성)	6,200	2015.12.17 ~ 2016.12.31	거창군 북상면 샘골길 38번길	신중철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4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목적 : 농지조성(포도 및 친환경 채소 재배)
-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 적(m <sup>2</sup> )		개간 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면 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543-3	9,783	4,506	농지조성 (포도 및 친환경 채소 재배)	33,000천 원	2015.12.17 ~ 2016.12.31	거창군 신원면 철마길 979	박윤순

-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4 )

거창군 고시 제2015 - 168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취소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된  
『거창군 고시 제2015-69호(2015.06.25.)』를 취소 고시합니다.

2015. 12. 23.

거 창 군 수

## 거창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에 따른 재열람·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7일

# 거 창 군 수

### 1.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1)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	거창지청	공공청사	거창읍 상림리 산25-7일원	-	21,270	21,270	-	건폐율:60%이하 용적률:250%이하 높이:5층이하
신설	9	거창지원	공공청사	거창읍 상림리 412-4일원	-	22,180	22,180	-	

##### (2)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거창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위치 : 거창읍 상림리 산25-7일원</li> <li>면적 : 21,270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조관련 공공기관이 통합된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함</li> </ul>
9	거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위치 : 거창읍 상림리 412-4일원</li> <li>면적 : 22,180m<sup>2</sup></li> </ul>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670-870/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거창군 공고 제2015 - 1111호

#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2 - 181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12. 23 .

##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8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181	150	8.0	1,424	거창읍 대동리 33-1번지 ~ 거창읍 대동리 15-1번지	거고60호 (‘01.12.31)	2015.12 ~ 2017.12.31

###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 - 18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3,658	1,399					
1	거창읍 대동리	33-1	도	1,809	83	-	거창군			
2	거창읍 대동리	32-3	대	227	225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협동 조합			
3	거창읍 대동리	964-1	도	19,153	39	-	국(건설부)			
4	거창읍 대동리	31-6	대	159	9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31-6	박정자			
5	거창읍 대동리	30-3	대	104	6	서울 강남구 개포동 503 개포1차우성아파트 5-1305	이지민			
6	거창읍 대동리	83-11	대	57	19	거창군 거창읍 동동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아파트 3-1301	정남권 김진식			
7	거창읍 대동리	946-46	대	24	21	-	국(재무부)			
8	거창읍 대동리	85-7	전	281	24	-	거창군			
9	거창읍 대동리	85-11	전	54	54	-	거창군			
10	거창읍 대동리	85-4	대	280	3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71	김심순			
11	거창읍 대동리	87-3	대	189	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9-1	원정규			
12	거창읍 대동리	87-11	대	89	14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7-11	이영자			
13	거창읍 대동리	965-22	대	33	4	-	국(재무부)			
14	거창읍 대동리	15-9	대	172	11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8-10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7-11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5-9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00-4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5-9	민정현 이영자 이삼식 강연순 조현석			
15	거창읍 대동리	15-4	천	370	42	-	국(건설부)			
16	거창읍 대동리	943-21	천	355	24	-	국(건설부)			
17	거창읍 대동리	943-20	도	8,467	58	-	국(건설부)			
18	거창읍 대동리	32	대	676	18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협동 조합			
19	거창읍 대동리	31-7	대	136	51	거창군 거창읍 동동 31	최현수			
20	거창읍 대동리	30-4	대	163	98	거창군 거창읍 동동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아파트 3-1301	정남권 김진식			
21	거창읍 대동리	83-21	대	47	47	-	거창군			
22	거창읍 대동리	30-5	대	158	3	경남 창원시 웅호동63 롯데아파트 9-203	배춘석			
23	거창읍 대동리	946-31	대	99	76	-	국(재무부)			
24	거창읍 대동리	86-2	전	71	71	-	거창군			
25	거창읍 대동리	86-1	전	336	9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9-1	원정규			
26	거창읍 대동리	87-21	전	142	104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9-1	원정규			
27	거창읍 대동리	87-25	도	7	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7-2	구재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8	거창읍 대동리	965-23	대	20	20	-	국(재무부)			
29	거창읍 대동리	15-1	대	211	5	거창군 거창읍 동동 1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541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7-2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5-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 베어스타운 103-603	허경만 정정희 구재모 조옥봉 배길동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 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50132/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이나 전화(055-940-3594),FAX(055-940-3579), E-mail : qkrrb00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2. 제정이유

- WHO 안전도시 인증 공인 기간 만료에 따른 명칭 변경
- 군민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군민안전보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정삭제(제5조제7호)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나. 규정신설(안 제5조제7호)

-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을 추진 근거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15. 12 . 23. ~ 2016. 1 . 12.(20일간)

5. 「거창군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055-940-3634, Fax055-940-3999 또는 메일 yl79@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4】** 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5-
----------	-------

제출연월일	2015. 12. 23.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 1. 제안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나. 군민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군민안전보험 지원을 통한 안전도시 조례 정비
  - 안전도시 사업범위에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2. 23. ~ 2016. 1. 12.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거창군은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의 범위) <u>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u>	제5조(사업의 범위) <u>7. 거창군은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u>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대상 및 분납횟수를 확대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대상 및 분납횟수 개선함(안 제12조)

- 대상 : 공사기간 1년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1억원 이상  
⇒ 원인자부담금 4천만원 이상

- 횟수 : 3회 ⇒ 4회로 확대함

나.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함

4. 입법예고기간 : 2015. 12 . 23 . ~ 2016. 1 . 12 .

5.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670-80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055-940-8418, Fax055-940-8418 또는 메일 alsatao@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2. 22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 1. 제안이유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대상 및 분납횟수를 확대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대상 및 분납횟수 개선함(안 제12조)

- 대상 : 공사기간 1년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1억원 이상  
⇒ 원인자부담금 4천만원 이상
- 횟수 : 3회 ⇒ 4회로 확대함

#### 나.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선함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2. 23. ~ 2016. 1. 12.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 (5) 성별영향분석 : 분석 및 반영여부 기술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하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를 “조례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을 “하수도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를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계속 제1항의”를 “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른 수도요금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하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